

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93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5. 09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○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(안 제28조의1)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공문 : 세정과-7100(2005.08.19)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

○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 제 2005- 407 호

4. 본문 : 붙임참조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28조의1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적용시한) 제28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 신 설 〉	<p>제28조의1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</p>